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2. 12. 20

총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2. 12. 13
- 나. 제출자 : 서 산 시 장
- 다. 회부일자 : 2002. 12. 13
- 라. 상정일자 : 2002. 12. 20

2.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 : 자치행정과장 최진각)

가. 개정이유

- 새로운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환하되
- 업무의 연속성, 조직의 안정성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기능·인력·사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을 수행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 시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기구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 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 를 신설함 (안 제5조제1항).
- 총무국의 분장사무중 “병무” 및 “통신” “재난관리” 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및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에 관한 사항” 을 신설함(안 제5조제2항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 사회산업국의 “사회여성복지과” 를 “사회복지과” 로 기구명칭을 변경함 (안 제6조제1항).
-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중 “재난방재”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6조의2제2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의견 요지

- 금번에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서 본안에서는 그동안 대대적으로 실시한 구조조정 등을 감안하여 기구·인력의 대폭적인 개편보다는 기능의 조정·보완과 일부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최퇴, 유사 중복 기구를 정비하는 것임.
- 주요 검토내용은
 - 개정조례안 제4조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전산담당관실로 변경하여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전산업무와 총무국의 통신업무를 이관받고
 - 국민의 레저활동 증가와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기를 부양키 위하여 기존의 문화관광업무는 별도로 문화관광과를 신설, 개정조례안

제5조의 총무국 산하에 두고, 도내 유일하게 우리시에만 설치된 민방 위재난관리과의 폐지와 함께

- 총무국의 분장사무중 지방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병사업무의 삭제와 통신업무, 재난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각각 공보전산담당관실과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하여 기능을 조정하고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를 추가하였음.
- 또한 명칭이 복잡한 사회여성복지과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는 간단·명료하면서 부서의 업무전반을 함축할 수 있는 명칭인 사회복지과와 수도사업소로 조정한 것임.
-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의 근거법인 지방자치법 제102조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등을 종합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조직의 안정성과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가합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4.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및 소수의견 : 조직의 기능, 인력, 사무를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인사는 신중하게 하기 바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1
----------	----

제출년월일 : 2002. 12. 4.

제출자 : 서산시장

□ 개정이유

- 새로운 민선3기 출범에 따라 시의 조직과 기능을 새롭게 대두되는 행정의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환하되
- 업무의 연속성, 조직의 안정성 및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업무이관 등을 고려하여 조직의 기능·인력·사무를 합리적으로 재 배분,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시정을 수행하기 위함

□ 주요골자

- 시 행정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전산담당관실”로 기구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
- 총무국의 “민방위재난관리과”를 폐지하고, “문화관광과” 를 신설함(안 제5조 제1항)
- 총무국의 분장사무 중 “병무” 및 “통신”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및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함(안 제5조 제2항 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
- 사회산업국의 “사회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함(안 제6조 제1항)
-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중 “재난방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안 제6조의 2 제2항 제2호)

□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 : 해당 없음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02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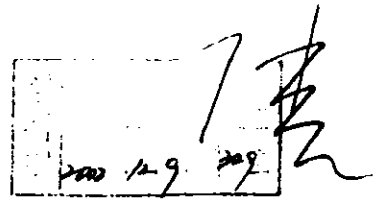
○ 충청남도 행정 12200-1513(2001. 6. 14)

-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명칭운용 등에 관한 지침

○ 민선3기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기구·인력조정 계획

○ 충청남도 행정13101-3011(2002. 12. 4)

- 읍면동 기능전환 관련 한시기구·정원승인통보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전산담당관”으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종합민원과 및 민방위재난관리과”를 “문화관광과 및 종합민원과”로 한다.

제5조중 제2항 제5호 및 제8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10호를 신설하며, 제12호를 제11호로 한다.

5. 새마을 및 읍면동 기능전환추진에 관한 사항
8. 민원, 호적 및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
9. 민방위 및 전시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0. 문화예술 및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제1항중 “사회여성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

제6조의 2 제2항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토이용 및 재난방재에 관한 사항

제15조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도사업소

별표3 사업소의 명칭중 “상하수도사업소”를 “수도사업소”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문화재제장”을 “문화재담당”으로 한다.

②서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전산담당관”으로 한다.

③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④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을 “공보전산담당관”으로 한다.

⑤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1 제2항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공보전산담당관

⑥서산시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및 제5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공보전산담당관”으로 한다.

⑦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⑧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사회여성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⑨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사회여성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⑩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중 “사회여성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⑪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8조제1항제1호중 “사회여성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⑫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중 “사회여성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⑬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여성복지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

⑭서산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⑮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⑯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⑰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5호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중 “시험담당주사”를 “정수담당주사”로 한다.

⑱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항중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시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부시장 밑에 기획감사담당관 및 <u>문화공보담당관</u>을 둔다.</p>	<p>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의 설치) ----- ----- <u>공보전산담당관</u>-----.</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①총무국에 자치행정과, 세무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및 <u>민방위재난관리과</u>를 둔다.</p> <p>② (생략)</p> <p>1. 내지 4.(생략)</p> <p>5. <u>도의새마을 및 통신업무에 관한 사항</u></p> <p>6. 내지 7.(생략)</p> <p>8. <u>민원·호적·병무 및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u></p> <p>9. <u>민방위, 전시 비상대책 및 재난 관리에 관한 사항</u></p> <p>10. (신설)</p> <p>12. (생략)</p>	<p>제5조(총무국에 두는 과)①----- ----- <u>문화</u> <u>관광과 및 종합민원과</u>-----.</p> <p>② (현행과 같음)</p> <p>1. 내지 4. (현행과 같음)</p> <p>5. <u>새마을 및 읍면동기능전환추진에 관한 사항</u></p> <p>6. 내지 7.(현행과 같음)</p> <p>8. <u>민원·호적 및 생활민원에 관한 사항</u></p> <p>9. <u>민방위 및 전시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u></p> <p>10.<u>문화예술 및 관광업무에 관한 사항</u></p> <p>11. (현행과 같음)</p>
<p>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①사회산업국에 <u>사회여성복지과</u>, 환경보호과, 지역경제과, 농림과 및 축산해양과를 둔다.</p>	<p>제6조(사회산업국에 두는 과) ①----- ----- <u>사회복지과</u>-----</p>

현행	개정안
<p>제6조의2(건설도시국에 두는 과)①(생략) ②(생략) 1. 내지 3.(생략) 4. <u>국토이용에 관한 사항</u> 5. 내지 9.(생략)</p> <p>제15조(소관사무) (생략) 1.(생략) 2. <u>상하수도사업소</u></p>	<p>제6조의2(건설도시국에 두는 과)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내지 3.(현행과 같음) 4. <u>국토이용 및 재난방재에 관한 사항</u> 5. 내지 9.(현행과 같음)</p> <p>제15조(소관사무) (현행과 같음) 1.(현행과 같음) 2. <u>수도사업소</u></p>

신 · 구조문 대비표

(다른 조례의 개정)

현행	개정안
<p>서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6조(간사와 서기) ① (생략) ② 간사는 <u>문화공보담당관</u>이 되고 서기는 <u>문화재계장</u>이 된다.</p>	<p>서산시향토유적보호조례 제6조(간사와 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 <u>문화관광과장</u> ----- ----- <u>문화재담당</u> -----.</p>
<p>서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제7조(간사 등) ① (생략) ② 간사는 <u>문화공보담당관</u>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③~④ (생략)</p>	<p>서산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 조례 제7조(간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공보전산담당관</u> -----, ----- ③~④ (현행과 같음)</p>
<p>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u>문화공보</u> <u>담당관</u> 및 건축과장이 되며 그밖에 위원은 건축물 미술 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p>	<p>서산시건축물에대한미술장식설치조례 제8조(위원회 구성) ①~②(현행과 같음) ③ ----- <u>문화관광과장</u> ----- ----- ----- -----</p>
<p>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 에관한조례 제2조(구성 및 운영) ①~②(생략)</p>	<p>서산시통합방위협의회등의구성및운영 에관한조례 제2조(구성 및 운영) ①~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③ (생략) 1. (생략) 2. <u>민방위담당간사:민방위재난관리과장</u> 3. <u>심리전감담당간사:문화공보담당관</u></p>	<p>③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u>민방위담당간사:종합민원과장</u> 3. <u>심리전담당간사:공보전산담당관</u></p>
<p>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 제25조의1(실무위원회의조직 및 운영) ①(생략) ②(생략) 1. <u>문화공보담당관</u> 2. (생략) 3. 내지 7. (생략) ③ ~ ④ (생략)</p>	<p>서산시소비자보호조례 제25조의1(실무위원회의조직 및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1. <u>공보전산담당관</u> 2. (현행과 같음) 3. 내지 7.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p>
<p>서산시공인조례 제6조 ①~③ (생략) ④전자공인을 등록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을 신청하여야 하며, <u>기획감사담당관</u>은 컴퓨터파일로 관리하고 자치행정과장은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u>기획감사담당관</u>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 장치를 하여야 한다.</p>	<p>서산시공인조례 제6조 ①~③ (현행과 같음) ④----- ----- -----, <u>공보전산담당관</u> ----- ----- ⑤<u>공보전산담당관</u>----- ----- -----.</p>

현행	개정안
<p>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생략) ②통제관은 총무국장이 되며, 담당관은 <u>민방위재난관리과장</u>이 되고, 실무반은 서산시관련공무원과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된 자 등으로 한다.</p>	<p>서산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재해대책본부의 운영) ①(현행과 같음) ②----- <u>종합민원과장</u>----- ----- -----</p>
<p>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회계공무원 관직) ①의료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u>사회여성복지과장</u>, 기금 출납공무원은 시의 의료보장 사회담당으로 한다.</p>	<p>서산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3조(회계공무원 관직) ①----- ----- -----<u>사회복지과장</u>, ----- -----</p>
<p>②(생략)</p>	<p>②(현행과 같음)</p>
<p>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0조(회계 공무원) ①(생략) 1. 기금운용관 : <u>사회여성복지과장</u> 2. (생략) ②(생략)</p>	<p>서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제10조(회계 공무원) ①(현행과 같음) 1. 기금운용관 : <u>사회복지과장</u> 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p>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내지 ④(생략) ⑤간사 1인과 서기 각1인을 두되, 간사는 <u>사회여성복지과장</u>으로 하고, 서기는 가정복지담당으로 한다.</p>	<p>서산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내지 ④(현행과 같음) ⑤----- -----<u>사회복지과장</u>----- -----</p>

현행	개정안
<p>서산시여성발전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내지④(생략) ④위원은 사회산업국장, <u>사회여성복지과장</u>, 시의회의원 1인, 서산시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발전 및 복지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7조(간사) -----, <u>사회복지과장</u>-----</p>
<p>제8조(회계공무원 등) ①(생략) 1. 기금운영관 : <u>사회여성복지과장</u></p>	<p>제8조(회계공무원 등) ①(현행과 같음) 1. 기금운영관 : <u>사회복지과장</u></p>
<p>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u>사회여성복지과장</u>으로 한다.</p>	<p>서산시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7조(간사) -----, <u>사회복지과장</u>-----</p>
<p>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내지②(생략) ③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u>사회여성복지과장</u>, 시의회의원 2인과 여성문제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서산시여성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제3조(구성) ①내지②(현행과 같음) ③-----<u>사회복지과장</u>-----</p>

현행	개정안
<p>서산시환경기본조례 제24조(구성) ①내지③(생략) ④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환경보호과장, 농림과장, 축산해양과장, 건설과장, <u>상하수도사업소장</u>으로 한다.</p>	<p>서산시환경기본조례 제24조(구성) ①내지③(현행과 같음) ④----- ----- -----<u>수도사업소장</u>-----</p>
<p>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권한의 위임)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u>상하수도사업소장</u>에게 위임한다. 1. 내지13.(생략) ②내지③(생략)</p>	<p>서산시하수도사용조례 제21조(권한의 위임) ①----- -----<u>수도사업소장</u>----- ----- 1. 내지13.(현행과 같음) ②내지③(현행과 같음)</p>
<p>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생략) 1. 징수관 - <u>상하수도사업소장</u> 2. 경리관 - <u>상하수도사업소장</u> 3. 총괄채권관리관 - <u>상하수도사업소장</u> 4. 총괄채무관리관 - <u>상하수도사업소장</u> 5. 물품관리관 - <u>상하수도사업소장</u> 6. 내지 9.(생략) ②(생략)</p>	<p>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①(현행과 같음) 1. 징수관 - <u>수도사업소장</u> 2. 경리관 - <u>수도사업소장</u> 3. 총괄채권관리관 - <u>수도사업소장</u> 4. 총괄채무관리관 - <u>수도사업소장</u> 5. 물품관리관 - <u>수도사업소장</u> 6. 내지 9.(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p> <p>제2조(구성) ①내지②(생략) ③(생략) 1. 내지 4.(생략) 5. 당연직 위원으로 <u>상하수도사업소장</u></p> <p>제9조(간사등)①(생략) ②위원회의 간사는 <u>상하수도사업소 시험담당주사</u>가 되며, 서기는 관련 업무담당자가 된다.</p>	<p>서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p> <p>제2조(구성) ①내지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1. 내지 4.(현행과 같음) 5. 당연직 위원으로 <u>수도사업소장</u></p> <p>제9조(간사등)①(현행과 같음) ②----- <u>정수담당주사</u>----- -----.</p>
<p>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p> <p>제3조(조직 및 임기) ①내지③(생략) ④당연직 위원은 <u>세무과장·지적과장·농림과장·건설과장·도시과장·건축과장·상하수도사업소장</u>이 된다.</p>	<p>서산시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조례</p> <p>제3조(조직 및 임기)①내지③(현행과 같음) ④----- ----- -----<u>수도사업소장</u>-----.</p>